

의안번호	제 168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3년 1월 4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8
----------	-----

제출연월일 : 2023. 1.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 위원 연임 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재산 기준 신설(안 제13조제3항)

1) (기준금액) 취득 2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

2) (기준면적) 취득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5조제4항 등)

1) 변경 및 삭제된 인용 조문 정비

2)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자 감면 조항 신설(안 제34조제7항)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감면

마. 관사 구분(1~3급) 조항 삭제(안 제50조)

바. 1·2급 관사 운영비 지원 조항 삭제(안 제5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2. 11. 4.~2022. 11. 24.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용·수익 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2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허가받은”을 “사용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수익 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8조 중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을 “영 제32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39조제3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3호 중 “경비, 보일러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함)”를 “경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제20조 제목,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목,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호, 제21조제6호, 제22조 제목,

제22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 제목, 제24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목, 제35조제3항 본문,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중 “사용·수익 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u>사용·수익허가</u></p> <p style="padding-left: 20px;">나.·다. (생략)</p> <p>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라. 교육지원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와 <u>사용·수익허가</u></p> <p style="padding-left: 20px;">마. (생략)</p> <p>3.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u>사용·수익허가</u></p> <p style="padding-left: 20px;">나.·다.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7조의2제1항 제3호</u>에 따른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p>	<p>제4조(위임사무)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 <u>사용허가</u></p> <p style="padding-left: 20px;">나.·다.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 <u>사용허가</u></p> <p style="padding-left: 20px;">마.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 <u>사용허가</u></p> <p style="padding-left: 20px;">나.·다.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제10조의3제1항 제3호</u> ----- ----- -----</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 <u><신설></u></p>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p> <p>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u>사용·수익허가</u> 하여서는 안 된다.</p> <p>1. 2. (생략)</p> <p>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의 보존의무</p> <p>6. <u>사용·수익허가</u>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용허가</u>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1조(사용허가) ----- <u>사용허가</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사용허가</u> -----</p> <p>6. <u>사용허가</u> ----- -----</p>

현행	개정안
<p>7.·8. (생략)</p>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u>사용·수익</u> 허가) 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u>사용·수익허가</u>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u>사용·수익허가</u>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재산의 일시 <u>사용·수익허가</u>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④ ~ ⑦ (생략)</p> <p>⑧ 행정재산의 일시 <u>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u>(이하 이 조에서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p> <p>1.·2. (생략)</p> <p>제23조(<u>사용·수익허가부</u>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p>	<p>7.·8. (현행과 같음)</p>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u>사용허가</u>)</p> <p>① ----- ----- ----- ----- <u>사용허가</u> ----- ----- ----- -----.</p> <p>② ----- <u>사용허가</u>----- ----- ----- -----.</p> <p>③ ----- <u>사용허가</u> ----- ----- ----- -----.</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u>사용허가를 받은</u> ----- ----- -----.</p> <p>1.·2. (현행과 같음)</p> <p>제23조(<u>사용허가부</u>의 비치) ----- -----</p>
<p>제23조(<u>사용·수익허가부</u>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p>	<p>제23조(<u>사용허가부</u>의 비치) ----- -----</p>

현행	개정안
<p><u>사용·수익 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u>사용허가부</u>----- ----- -----.</p>
<p>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과 제5항,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u>사용·수익 허가</u>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 ----- <u>사용허가</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u>사용·수익허가</u>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③ ----- <u>사용허가</u> ----- ----- ----- ----- ----- ----- -----.</p>
<p>④ ~ ⑥ (생략)</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u>사용수익허가</u>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p>	<p>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u>사용허가</u>----- -----</p>

현행	개정안
<p>규정을 준용한다.</p> <p>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u>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u>제6호</u>에 따른다.</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u>사용·수익허가</u>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제3조제1호</u>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감액비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④·⑤ (생략)</p> <p>⑥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u>사용·수익허가</u> 하는 경우에 대부료</p>	<p>-----.</p> <p>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영 제32조제3항</u>----- ----- <u>제39조제3항</u>-----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u>제6호</u>-----.</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 ----- ----- ----- <u>사용허가</u>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u>제3조제1호</u>-----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사용허가</u> -----</p>

현행	개정안
<p>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u>사용·수익허가</u> 및 대부) ①·② (생략)</p> <p>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u>사용·수익허가</u>,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p> <p>④ (생략)</p> <p>제36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u>사용·수익허가</u>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감액 조정한다.</p> <p>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⑦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u>사용허가</u>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u>감면할 수 있다.</u></p> <p>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u>사용허가</u> 및 대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사용허가</u> -----</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6조(대부료 등의 조정) ----- <u>사용허가</u> -----</p> <p>-----.</p> <p>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p>

현행	개정안
<p>재산의 대부분이나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u>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p>② ~ ④ (생략)</p> <p><u>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 관사”란 <u>교육감 관사를 말한다.</u> 2. “2급 관사”란 <u>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를 말한다.</u> 3. “3급 관사”란 <u>1급·2급 관사 이외의 교직원</u>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 	<p>----- ----- <u>사용허가</u> -----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u>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u></p>	<p>제51조(사용허가) ----- ----- -----.</p> <p><단서 삭제></p>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p>

현행	개정안
<p>1.·2. (생략)</p> <p>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함)</p> <p>4.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 ----- 경비</p> <p>4.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23. 1. 1.시행)]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제23조 삭제 <2022. 4. 2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 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불일치 등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4. 작성자: 행정국 재무과장 한명수